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시행 2015.3.24]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36호, 2015.1.23,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피난설비인 피난기구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7.4.1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피난설비인 피난기구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1.23.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피난설비인 피난기구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피난기구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

제2조(적용범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3호가목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다목1)에 따른 피난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7.4.12.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피난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015.1.23. 개정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3호가목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다목1)에 따른 피난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4호"를 "별표 5 제3호가목"으로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다목1)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을 구분하는 별표 1의 기준에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를 추가함.

제2조의2(피난기구의 종류) 영 제3조에 따른 별표 1 제3호가목4)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란 미끄럼대·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공기안전매트·다수인 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등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15.1.23.]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15.1.23.	제2조의2(피난기구의 종류) 영 제3조에 따른 별표 1 제3호가목4)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란 미끄럼대·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4호"를 "별표 5 제3호가목"으로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의 제

	<p>강기·공기안전매트·다수인 피난장비·승강식 피난기 등을 말한다.</p>	<p>1호다목1)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을 구분하는 별표 1의 기준에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를 추가함.</p>
--	---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난사다리"란 화재 시 긴급대피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2. "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간이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4. "구조대"란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 "공기안전매트"란 화재 발생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 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6. 삭제 <2015.1.23.>
7. "다수인피난장비"란 화재 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를 말한다.<신설 2011.11.24>
8. "승강식 피난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식피난기를 말한다.

<신설 2011.11.24>

9.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란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격납하여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사다리 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아니하는 내림식 사다리를 말한다.

<신설 2011.11.24.>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7.4.12.	<p>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6. "피난밧줄"이라 함은 급격한 하강을 방지하기 위한 매듭 등을 만들어 놓은 밧줄을 말한다.</p>	
2011.11.24. 신설	<p>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7. "다수인피난장비"란 화재 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를 말한다.</p> <p>8. "승강식 피난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식피난기를 말한다.</p> <p>9.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란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격납하여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사다리 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아니하는 내림식 사다리를 말한다.</p>	제3조제7호부터9호까지 신설한다.
2015.1.23. 개정	<p>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6. 삭제</p> <p>7. ~ 9. (생략)</p>	건축물의 관계인에 대한 피난활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피난밧줄 설치기준을 삭제함

제4조(적용 및 설치개수 등) ① 피난기구는 별표 1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로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하나의 층이 영 별표 2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 내지 제18호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마다,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개정 2010.12.27., 2015.1.23.>
3.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아파트(「주택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이상 세로 1m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개정 2008.12.15. 2010.12.27>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 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24., 2015.1.23.>
3.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4.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개정 2011.11.24.>
5.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완강기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개정 2015.1.23.>
7.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8.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 상 지장이 없고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9. 다수인 피난장비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신설 2011.11.24.>
 - 가. 피난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는 장소에 적재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 견고하게 설치할 것<신설 2011.11.24>
 - 나. 다수인피난장비 보관실(이하 "보관실"이라 한다)은 건물 외측보다 돌출되지 아니하고, 빗물·먼지 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 일 것<신설 2011.11.24>
 - 다. 사용 시에 보관실 외측 문이 먼저 열리고 탑승기가 외측으로 자동으로 전개될 것<신설 2011.11.24>
 - 라. 하강 시에 탑승기가 건물 외벽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신설 2011.11.24>
 - 마. 상·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탑승기의 하강경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할 것<신설 2011.11.24>
 - 바. 하강 시에는 안전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복, 흔들림, 경로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신설 2011.11.24>
 - 사. 보관실의 문에는 오작동 방지조치를 하고, 문 개방 시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유효한 경보음을 발하도록 할 것<신설 2011.11.24>
 - 아. 피난층에는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기구가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신설 2011.11.24>
 - 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신설 2011.11.24>
10.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신설 2011.11.24>
 - 가.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단, 건축물 규모가 지상 5층 이하로서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신설 2011.11.24>
 - 나.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60cm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11.24>

- 다.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 직경 60cm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범위는 제외 한다.<신설 2011.11.24>
- 라.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신설 2011.11.24>
- 마.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cm이상의 간격을 둘 것<신설 2011.11.24>
- 바.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 할 것<신설 2011.11.24>
- 사.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 할 것<신설 2011.11.24>
- 아.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신설 2011.11.24>
- 자.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신설 2011.11.24>
- 차. 승강식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신설 2011.11.24.>

④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본항 전문개정, 2015.1.23.]

년도(개정)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 이유
1982.9.15.	<p>제3절 피난설비 제1관 피난기구 제100조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법 제29조제1항·영 제17조제11호·영 제18조제9호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기구는 별표 8에 의하여 소방대상물별로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p> <p>② 피난기구는 의료원·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심신장애자복지시설·여관·호텔 및 여인숙에 있어서는 당해층의 수용인원 100인(완강기의 경우는 200인)이하마다, 집회장·음식점·유기장·시장·복합건축물 및 학술전시관에 있어서는 수용인원 200인(완강기의 경우는 400인)이하마다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수용인원 300인(완강기의 경우는 600인)이하마다 1개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 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2. 피난기구(미끄럼봉·피난로프·피난교 및 피난용 트랩을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한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피난상 지장이 없는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p>4.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소방대상물의 부착면과 10센티미터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p> <p>5. 4층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p> <p>6. 완강기는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p> <p>7. 완강기의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강착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p> <p>8.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p> <p>9.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p> <p>④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피난기구가 있다는 뜻과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p>	
<p>1984.8.16. 개정</p>	<p>제100조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① (생략)</p> <p>②피난기구는 층마다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개수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p> <p>1. 피난기구는 의료원·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심신장애자복지시설·여관·호텔 및 여인숙에 있어서는 당해층의 수용인원 100인이하마다, 집회장·음식점·유기장·시장·복합건축물 및 학술전시관에 있어서는 당해층의 수용인원 200인이하마다, 기타의 것은 300인이하마다 1개이상을 설치할 것.</p> <p>2. 호텔(지하층·피난층·11층이상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1호의 피난기구외에 객실마다 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p> <p>③피난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삭제</p> <p>5. ~ 9. (생략)</p> <p>④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피난기구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p> <p>⑤수직구조대(복식에 한한다)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1. 수직구조대는 화재·바람·비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따로 구획된 전용실에 설치할 것.</p> <p>2. 수직구조대의 전용실은 활강에 필요한 면적이 되도록 하고, 피난에 필요한 조명설비를 할 것.</p> <p>3. 수직구조대의 전용실은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고(활강로를 제외한다)피난방향으로 열수</p>	<p>호텔의 경우에는 화재시 인명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피난사다리·피난용트랩·피난교등의 피난기구외에 객실마다 반드시 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시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영 제100조제2항)</p>

년도(개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이유
1993.11.11. 개정	<p>있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p> <p>제100조 (피난기구의 적응 및 설치개수등 <개정 1993.11.11.>) ① 피난기구는 별표 8에 의하여 소방대상물별로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11.></p> <p>② 피난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개수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11.></p> <p>1.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제곱미터마다, 위락시설·관람집회및 운동시설·판매시설·전시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하나의 층이 영 별표 1의 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8항 내지 제22항중 2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제곱미터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p> <p>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피난기구외에 호텔 또는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객실(지하층 또는 피난층을 제외한다)마다 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를, 아파트(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를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 ④ (생략)</p> <p>⑤ 삭제 <1993.11.11.></p>	<p>(1) 피난기구의 소요개수산정기준을 수용 인원기준에서 바닥면적기준으로 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함(제100조제2항제1호).</p> <p>(2) 수직구조대의 설치기준을 삭제하고, 아파트에는 단지마다 공기안전매트를 1개씩 설치하도록 함(제100조제2항제2호).</p>
1995.5.27. 개정	<p>제100조 (피난기구의 적응 및 설치개수등 <개정 1993.11.11.>)</p> <p>① ~ ③ (생략)</p> <p>④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제10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p> <p>⑤ (생략)</p>	<p>소방설비의 기능향상 및 내구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설비의 주요 구성품인 소화전함, 위치표시등,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 축광식표지, 비상콘센트, 내화·내열전선에 관한 성능기준을 명시함</p>
2001.7.27. 개정	<p>제100조 (피난기구의 적응 및 설치개수등 <개정 1993.11.11.>)</p> <p>① ~ ② (생략)</p> <p>1. (생략)</p> <p>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피난기구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지하층 또는 피난층을 제외한다)마다 간이완강기 또는 피난밧줄을 설치하여야 한다.</p> <p>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피난기구외에 아파트(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p>	<p>옥상 또는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기안전매트의 설치의무를 면제함(제100조제2항제3호).</p>

	<p>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1. (생략)</p> <p>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미끄럼붕·피난교·피난용트랩·숙박시설의 객실에 설치되는 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 9. (생략)</p> <p>④ ~ ⑤ (생략)</p>	
<p>2003.12.15. 개정</p>	<p>제100조 (피난기구의 적응 및 설치개수등 <개정 1993.11.11.>)</p> <p>① ~ ② (생략)</p> <p>1. ~ 2. (생략)</p> <p>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피난기구외에 아파트(주택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 ⑤ (생략)</p>	<p>제100조제2항제3호 본문중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를 "주택법시행령 제47조"로 한다.</p>
<p>년도(개정)</p>	<p>화재안전기준</p>	<p>개정 이유</p>
<p>2007.4.12.</p>	<p>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① ~ ② (생략)</p> <p>1. (생략)</p> <p>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간이완강기 또는 피난밧줄을 설치할 것</p> <p>3. (생략)</p> <p>③ (생략)</p> <p>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p> <p>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미끄럼붕·피난교·피난용트랩·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생략)</p> <p>4.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p>	

	<p>5. (생략) 6. 완강기,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7. ~ 8. (생략) ④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2. 위치표지는 주위 조도 0lx에서 2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으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위치표지의 표시면은 쉽게 변형·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할 것 4. 위치표지의 표시면의 휘도는 주위 조도 0lx에서 20분간 발광후 24mcd/m²으로 할 것</p>	
<p>2008.12.15. 개정</p>	<p>제4조(적용 및 설치개수 등) ① ~ ③ (생략)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이상 세로 1m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2. ~ 8. (생략) ④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2. 위치표지는 주위 조도 0lx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1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으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위치표지의 표시 면은 쉽게 변형·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할 것 4. 위치표지의 표시면의 휘도는 주위 조도 0lx에서 60분간 발광 후 7mcd/m²으로 할 것</p>	
<p>2010.12.27. 개정</p>	<p>제4조(적용 및 설치개수 등) ① ~ ② (생략) 1. (생략)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p>	<p>숙박시설의 경우 객실마다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간이완강기의 경우 일회용이므로 투숙객이 2인 이상일 경우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객실의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객실마다 반복사용이</p>

	<p>3. (생략) ③ (생략)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이상 세로 1m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2. ~ 8. (생략) ④ (생략)</p>	<p>가능한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 2개 이상을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숙박시설 3층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 피난밧줄 대신 완강기를 설치하고, 피난기구 설치장소의 창문의 높이를 건축법과 동일하게 1.2m 높이로 개정함.</p>
<p>2011.11.24. 개정</p>	<p>제4조(적용 및 설치개수 등) ① ~ ③ (생략) 1. (생략)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미끄럼봉·피난교·피난용트랩·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 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생략) 4.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5. ~ 8. (생략) 9. 다수인 피난장비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피난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는 장소에 적재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 견고하게 설치할 것 나. 다수인피난장비 보관실(이하 "보관실"이라 한다)은 건물 외측보다 돌출되지 아니하고, 빗물·먼지 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 일 것 다. 사용 시에 보관실 외측 문이 먼저 열리고 탑승기가 외측으로 자동으로 전개될 것 라. 하강 시에 탑승기가 건물 외벽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마. 상·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탑승기의 하강 경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할 것 바. 하강 시에는 안전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복, 흔들림, 경로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사. 보관실의 문에는 오작동 방지조치를 하고, 문 개방 시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유효한 경보음을 발하도록 할</p>	

	<p>것</p> <p>아. 피난층에는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기구가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p> <p>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p> <p>10.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p> <p>가.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단, 건축물 규모가 지상 5층 이하로서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p> <p>나.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60cm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p> <p>다.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 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 직경 60cm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범위는 제외 한다.</p> <p>라.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p> <p>마.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cm이상의 간격을 둘 것</p> <p>바.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 할 것</p> <p>사.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 할 것</p> <p>아.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p> <p>자.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 할 것</p> <p>차. 승강식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 할 것</p> <p>④ (생략)</p>	
<p>2015.1.23. 개정</p>	<p>제4조(적용 및 설치개수 등) ① ~ ② (생략)</p> <p>1. (생략)</p> <p>2.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p> <p>3. (생략)</p>	<p>피난기구 중 형식 및 성능기준이 없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피난기구의 삭제로 효율적인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확보</p> <p>1) 건축물의 관계인에 대한 피난활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피난밧줄 설치기준을 삭제함</p> <p>2)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의 경우 별표</p>

<p>③ (생략)</p> <p>1. (생략)</p> <p>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5 (생략)</p> <p>6. 완강기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p> <p>7. ~ 10. (생략)</p> <p>④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p>	<p>1의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의 종류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재질 및 구조 등 형식기준이 없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피난기구로서 현재 설치 및 생산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삭제함</p> <p>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축광식표지의 설치기준 중 조도와 식별도 및 표시면의 구조와 휘도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성능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도록 함</p>
---	--

제5조(설치제외) 영 별표 6 제7호 피난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23.>

1.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층
 -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 나.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건축법 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 다.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 라. 복도에 2 이상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이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 마.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소방대상물 중 그 옥상의 직하층 또는 최상층(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 나. 옥상의 면적이 1,500㎡ 이상이어야 할 것
 - 다. 옥상으로 쉽게 통할 수 있는 창 또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 라. 옥상이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 6m 이상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지(공원 또는 광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건축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3.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며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에 영 제2조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개구부가 2 이상 설치되어 있는 층(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4.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5.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 한한다)
6. 무인공장 또는 자동창고로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7.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거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층수로 산정된 층으로 사람이 근무하거나 거주하지 아니하는 장소<신설 2015.1.23.>

년도(개정)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 이유
1982.9.15.	<p>제101조 (피난기구의 설치 제외) ①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층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건축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되어 있을 것. 3.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였거나 당해층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제13조 내지 제22조의 기준에 의하여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것. 4.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건축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되어 있을 것. <p>②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여관·호텔·여인숙·기숙사·4층이상의 공동주택·의료원·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심신장애자복지시설 및 유치원에 한한다)중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고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피난상 유효하게 노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노대에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기타의 피난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층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직통 계단으로 직접 통하는 거실이 있는 층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층에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거실 또는 주된 출입구의 직통계단에 면하는 개구부에 다음의 구조에 의한 갑종방화문(방화샷다를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수시로 개폐할 수 있고 연기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폐쇄할 수 있을 것. 나. 폭이 0.75미터이상 높이가 1.8미터이상일 것. 3.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한 것. <p>④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옥상의 직하층(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경기장·집회장 및 시장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층에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옥상의 면적이 1천 500제곱미터이상일 것. 3. 옥상에 면하는 창 및 출입구가 갑종방화문 또는 철제망입 유리문으로 되어 있을 것. 4.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개이상의 직통계단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되어 있을 것. 	
1984.8.16.	<p>제101조 (피난기구의 설치 제외) ① 피난기구를 설</p>	제101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p>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층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호텔의 객실에 설치하는 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생략)</p> <p>2.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건축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을 것.</p> <p>3.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을 것.</p> <p>4. 복도에 2이상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의 구조일 것.</p> <p>5.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 할 수 있을 것.</p> <p>②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고 각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피난상 유효하게 노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노대에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기타의 피난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층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한쪽이 바깥과 접한 편복도형의 공동주택이나,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강의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 한한다)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같이 신설하고,</p> <p>동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p> <p>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제2항중 괄호부분을 삭제하고,</p> <p>동항중 "거실의"를 "각 거실의"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년도(개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이유
1993.11.11.	<p>제101조 (피난기구의 설치제외) ①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0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호텔·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 또는 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밧줄·간이완강기 또는 공기안전매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층</p> <p>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p> <p>나.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준불연재로 또는 난연재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건축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p> <p>다.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한다.</p> <p>라. 복도에 2이상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이 건축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p> <p>마.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p> <p>2.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소방대상물중 그 옥상의 직하층 또는 최상층(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제외한다)</p>	<p>4층이하의 건축물로서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설치된 것과 무인창고 또는 공장에는 피난기구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하여 과도한 규제를 완화함(제101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p>

	<p>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옥상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옥상으로 쉽게 통할 수 있는 창 또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라. 옥상이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 6미터 이상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 또는 공지(공원 또는 광장등으로서 내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건축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이하이며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에 영 제2조 제4호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개구부가 2이상 설치되어 있는 층(관람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노유자 시설 또는 전시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4. 편복도형 또는 계단형 아파트 5.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 한한다) 6. 무인공장 또는 자동창고로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1993.11.11.]</p>	
<p>1995.5.27. 개정</p>	<p>제101조 (피난기구의 설치제외) ①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0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호텔·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 또는 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밧줄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편복도형 또는 계단실형 아파트로서 발코니를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5. ~ 6. (생략)</p>	<p>제101조제1항 본문단서중 "피난밧줄·간이완강기 또는 공기안전매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피난밧줄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998.5.12. 개정</p>	<p>제101조 (피난기구의 설치제외) ①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0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호텔·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피난밧줄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가. ~ 다. (생략) 라. 복도에 2이상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p>	<p>제101조제1항 단서중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 또는 아파트"를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 라목중 "건축법시행령 제37조"를 "건축법시행령 제35조"로 하며,</p>

	<p>이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p> <p>마.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p> <p>2. (생략)</p> <p>가. ~ 다. (생략)</p> <p>라. 옥상이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 6미터이상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 또는 공지(공원 또는 광장등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p> <p>3. (생략)</p> <p>4.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를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p> <p>5. ~ 6. (생략)</p>	<p>동항제2호 라목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건축법시행령 제37조"를 "건축법시행령 제35조"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001.7.27. 개정</p>	<p>제101조 (피난기구의 설치제외) ①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0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피난밧줄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6. (생략)</p>	<p>제101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호텔·관광숙박시설"을 "숙박시설"로 한다.</p>
<p>년도(개정)</p>	<p>화재안전기준</p>	<p>개정 이유</p>
<p>2007.4.12. 개정</p>	<p>제5조(설치제외) 영 별표 5 제7호 피난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피난밧줄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6. (생략)</p>	
<p>2015.1.23. 개정</p>	<p>제5조(설치제외) 영 별표 6 제7호 피난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6. (생략)</p> <p>7.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거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층수로 산정된 층으로 사람이 근무하거나 거주하지 아니하는 장소</p>	<p>피난기구의 설치제외 기준을 규정한 제5조 본문의 "영 별표 5"는 "영 별표 6"으로 상위법령 인용조문 표기오류를 정정함</p> <p>피난기구 설치기준의 효율적·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피난기구의 설치장소 중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거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층수로 산정된 층에 대하여 사람이 근무하거나 거주하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p>

제6조(피난기구설치의 감소) ①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층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피난기구의 2분의 1을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하여야 할 피난기구의 수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 ②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중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건널 복도가 설치되어 있는 층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피난기구의 수에서 해당 건널 복도의 수의 2배의 수를 뺀 수로 한다.
 1. 내화구조 또는 철골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건널 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방화셔터를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을 것
 3. 피난·통행 또는 운반의 전용 용도일 것
- ③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에 기준에 적합한 노대가 설치된 거실의 바닥면적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노대를 포함한 소방대상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노대가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피난 상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3. 노대가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거실부분과 방화 구획되어 있거나 또는 노대에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그 밖의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년도(개정)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 이유
1982.9.15. 개정	<p>제102조 (피난기구설치의 감소) ①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층에는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기구의 2분의 1을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하여야 할 피난기구의 수에 있어서 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p>②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건널복도가 설치되어 있는 층에는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기구의 수에서 당해 건널복도의 수의 2배의 수를 뺀 수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화구조 또는 철골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건널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방화샷다를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을 것 3. 피난·통행 또는 운반의 전용 용도일 것 	
년도(개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이유
1993.11.11. 개정	<p>제102조 (피난기구설치의 감소) ① ~ ② (생략)</p> <p>③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다음 각 호에 기준에 적합한 노대가 설치된 거실의 바닥면적은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서 이를 제외한다. <신설 1993.11.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대를 포함한 소방대상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2. 노대가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피난상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노대가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거실부분과 방화구획되어 있거나 또는 노대에 지상은 	제10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통하는 계단 그 밖의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	--

제7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피난기구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피난기구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9.8.24.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2010.12.27. 개정	제8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26일까지로 한다.	
2011.11.24. 개정	제8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1월 23일까지로 한다.	
2015.1.23. 개정	제8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8년 1월 22일로 함

부칙 <제2015-36호, 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본 자료는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의 이전 연혁법령인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1982.9.15.)과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993.11.11.)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매품>